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의안 번호	22-13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1. 20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- 나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,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함 (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)
- 다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의2)
- 라.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의3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제71조
- 나. 기타
  - 1) 개정 조례안: 붙임
  - 2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”로 한다.  
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.

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제7조의3(윤리특별위원회) ①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임기만료 전 사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----- ----- ----- -----.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(생략)	제7조(특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	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	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<신 설>	제7조의3(윤리특별위원회) ①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

<p>를 둔다.</p> <p>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임기만료 전 사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 3제2항의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---

# 관 련 법 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**제64조(위원회의 설치)**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**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**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**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**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